

사용자를 위한 연계정보(CI) 변환심사 절차 안내서



연계정보(CI) 변환심사

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연계정보(CI)를 일괄 변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및 처리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판단 하기 위해 변환 심사 진행

심사대상

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임시허가된 서비스(모바일전자고지, 금융마이데이터등) 연계정보(CI) 변환이 필요한 기관(법인)

일괄변환 조건

1. 개별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유하여야 함
2. 개별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고지업무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3.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와 연계정보(CI) 변환 목적(모바일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)이 일치해야 함

접수 서류

[공통서류] 연계정보(CI) 변환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[추가서류] 변환 방식 및 분류에 따라 해당 서류 접수

구분	모바일전자고지	금융 마이데이터
공통서류	1.연계정보(CI) 변환신청서 2.사업자등록증	1.연계정보(CI) 변환신청서 2.사업자등록증
추가서류	1.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.주민번호처리 유권해석자료 3.전자고지(모바일통지)계약서 4.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서	신용정보법 시행령 - 제5조 제2항(금융기관) - 제18조의6 제4항(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), 제5항(공공기관) - 제21조 제2항(금융기관) 분류에 따른 기관(법인)별 해당서류

심사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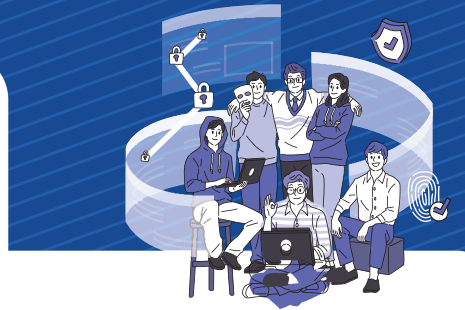
본인확인기관* 을 통해 접수된 기관 및 법인의 변환신청건을 대상으로 연계정보(CI) 변환심사 진행

※ 본인확인기관 : NICE평가정보(주), SCI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

※ 연계정보(CI) 변환심사 : 외부 전문심사위원(3인 내외)을 구성, 연계정보(CI) 일괄변환 적정성 여부 심사



금융 마이데이터 변환 대상 기관 심사 제출 서류



구분	대상	제출서류
금융기관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2항)	은행, 금융지주회사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,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수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,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, 한국무역보험공사,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	① 연계정보 변환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
	금융투자업자 · 증권금융회사 · 종합금융회사 · 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	①+②+ 금융투자업인가(허가)증
	보험회사	①+②+ 보험업등록증
	여신금융전문회사	①+②+ 여신금융업등록증
금융기관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)	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, 국채등록기관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신용회복위원회, 근로복지공단, 소프트웨어공제조합, 엔지니어공제조합, 정리금융회사, 체신관서, 전기공사공제조합, 주택도시보증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장학재단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서민금융진흥원, 자본재공제조합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유동화전문회사,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, 한국교직원공제회, 여객운수업 공제조합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제조합, 기업신용조회회사	① 연계정보 변환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
	대부업자	①+②+ 대부업등록증
	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	①+②+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등록증
신용정보제공 이용자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6의제4항)	전자금융업자,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,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, 경영여신업자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	① 연계정보 변환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
	전기통신사업자(기간통신사업 등록)	①+②+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
공공기관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6의제5항)	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공무원연금공단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	① 연계정보 변환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